

라틴어 법텍스트 번역에 관하여*

만프레드 푸어만**

번역: 이 상 훈***

I. 번역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외국어 수업으로부터 익히 알고 있다. 사람들은 어휘들이 낯설고, 문맥 파악하기 등등을 위해 헛되이 시도한다. 이에 관하여는 이제 언급하지 않을 것인데, 특히 텍스트 해독을 위해 언어교수법이 제공하는 도움들, 즉 구성, 분석, 그런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¹⁾ 여기서 라틴어 텍스트, 특히 법텍스트를 번역하고자 하는 사람은 라틴어를 완전히 통달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여기서는 언어에 능통하고 관련지식을 가진 번역자들이 대면하는 문제들을 일별하고자 한다. 그에게는 - 그를 진지하게 애먹이는 - 이해과정이 장애물인

* 원문: Manfred Fuhrmann, "Vom Übersetzen lateinischer Rechtstexte", *SZ* 111 (1994), S.363~375.

** [역주] Manfred Fuhrmann(1925~2005). 독일의 고전어문학자이며 번역가이며 라틴어문학 교수(1962년부터 키일대학, 1966년~1990년까지 콘스탄츠대학). 콘스탄츠대학 교수취임 강연인 *Die Antike und ihre Vermittler*(1969)에서 고전어문학 내에서의 개혁을 주창하였다. 특히 1970년~1982년에 걸쳐 총 7권의 키케로 연설문 번역전집을 출간한 업적으로 1990년 독일 언어 및 문학 학술원(Deutsche Akademie für Sprache und Dichtung)으로부터 요한-하인리히-포스 번역상(Johann-Heinrich-Voß-Preis für Übersetzung)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문이론과 수사학 입문서, 키케로와 세네카 전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주요 작품들도 번역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조교, 법학박사.

1) 이 주제에 대하여는 특히 다음을 보라: Niels Wilsing, *Die Praxis des Lateinunterrichts*, Bd. 1, Stuttgart 1964², 144ff.; Rainer Nickel, *Der altsprachliche Unterricht*, Darmstadt 1973, 119ff.; ders., *Die alten Sprachen in der Schule*, Kiel 1974, 130ff.; Friedrich Maier, *Lateinunterricht zwischen Tradition und Fortschritt*, Bd. 1, Bamberg, 1979, 205ff.

것이 아니라, 그가 산출하고 싶어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독일어 번역물이 (넘어야 할) 장애물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언과 격려를 구하는 자,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 좋은 번역을 위한 기준들을 손에 넣고자 하는 자는, 번역이론이나 번역학을, 즉 주로 언어학자들, 특히 통역학교에서 가르치는 자들의 전문분야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 약간 과장되게 전문용어를 남발하는 일이 드물지 않는데 - 주로 우리의 현재 생활현실의 실용텍스트에 집중하고 거기서 실천되고 있는 常例를 규칙으로 파악하곤 한다 - 이는 [364면] 먼 과거의 기록물들을 다루는 법사학자들도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저해하지는 않는다.²⁾ 언어학자들 외에 非고전어어문학의 학자들도 번역이라는 작업과 번역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못지않게 다루는데, 이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바, 무엇보다도 과거와 현재의 '문헌 번역(die literarische Übersetzung)'을 담당한다. 반면 고전 어문학은, 고대-유럽 전통내에서의 성과가 아주 풍부한 最古의 문학작품들을 管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번역문제에 대하여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유럽 차원에서 장르를 포괄하고 시대를 포괄하는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즉, 그때그때의 지배적인 번역기술, 그때그때의 번역의 목표집단, 방언이나 전문용어가 초래하는 어려움 기타 등등에 관한 연구 말이다. 현재의 번역이론을 가지고도 고전 어문학은 명백히 아직 어떤 것도 거의 착수할 수 없었는데, 비록 현재 번역이론들의 범주들이 현존하는 번역의 분석에 있어서나 새로운 번역의 생산에 있어서나 유용함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명의 예외가 곧바로 언급되어야만 한다. 즉 볼프강 샤테발트(Wolfgang Schadewaldt)* - 그는 실제 번역가로서 활동했을 뿐만

2) 필자는 무엇보다도 Wolfram Wilss, Übersetzungswissenschaft - Probleme und Methoden, Stuttgart 1977을 공부하여 많이 배웠다. 번역이론의 역사적 차원(히에로니무스, 루터, 노발리스, 괴테, 솔라 이어마허, W. 폰 홈볼트 등)은 Hans Joachim Störig (Hg.),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Darmstadt 1973의 사료집을 통하여 가장 잘 알 수 있다.

* [역주] Wolfgang Schadewaldt(1900~1974). 독일 고전어문학자이자 교수(튀빙엔대학, 프라이부르크대학). 특히 고전그리스어문학과 번역가로 유명함.

아니라(이것을 많은 고전어문학자들이 했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직업적 문학번역가들은 단지 드물게만 고대 작품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번역활동에 관하여 거듭하여 보고하였는데, 실로 고대 텍스트 번역자라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고찰과 함께 말이다.³⁾ 모든 번역의 유명한 딜레마에 대하여, 다른 말로 하면 ‘직역이나 의역이나(wörtlich oder frei)’에 대하여 샤테발트는, ‘實寫的으로(dokumentarisch)’, 즉 원문에 밀착하여라는 표현과, ‘환치적으로(transponierend)’, 즉 가급적 번역어의 옷에 포근히 맞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샤테발트의 확인에 의하면, 「통용되는 견해에 따르면, 實寫的 번역은 실용텍스트(Gebrauchstexte)와 특히 전문학문 분야의 작품에 적절하며,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원문의 가능한 한 정확한 재현이 중요하다. [365면] 반면에 환치적 번역은 - 실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듯이 타당하게도 - 문학적 또는 운문 텍스트에 적용되며, 그곳에서는 상당히 가독성있고 듣기 좋은 독일어로 하기 위하여 번역자는 어느 정도의 재량을 요구해도 된다.」 그러나 샤테발트는 이러한 널리 퍼진 견해와는 거리를 둔다. 「환치적 번역은 고대의 문학작품(Dichtung)을 반대로 적절하게 재현하지 못하며, 실제로는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로 하여금 비교적 최근의 또는 최신의 독일 시인 처럼 읊조리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왜곡시킨다.」 샤테발트는 따라서 특히 수준 높은 詩문학작품(Dichtung)에 대하여는 實寫的인, 원문의 문언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번역을 요구하는데, 「그에 있어서 세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첫째, 어떤 것도 빠뜨리거나 덧붙여서는 안 된다. 둘째, 당해 시인에게 고유한 이미지들이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셋째, 번역은 원래의 어순을 가급적 유지하고자 해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샤테발트는 관행적인 용어법 위주의 단순한 텍스트에 대하여는 환치적 방식을 허용한다 -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개별 어휘들이 아니라 단어 연쇄들, 관용적 成句들을 환치해야만 하는데, 그 텍스트가 번역어에서 원문의 언어와 똑같이 두드러지지 않고 일상적으로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샤테발트는, 실로 내가 보기에는 완전 타

3) 무엇보다 Wolfgang Schadowaldt, Antikes Drama auf dem Theater heute - Übersetzung, Inszenierung, Pfullingen 1970 = Hellas und Hesperien, Zürich - Stuttgart 1970², 650ff.을 보라.

당하게, 통용되는 견해에 반대되는 두 가지 관점을 언명하였다. 즉, ‘수준 높은’ 문헌은 實寫的으로, 즉 가능한 한 직역으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보통의 (gewöhnlich) 텍스트의 경우에는 재량이 허용되며, 심지어 권장된다.

II. 번역비판의 목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내용이 강조되는 텍스트, 형식이 강조되는 텍스트, 호소가 강조되는 텍스트. 내용이 강조되는 텍스트란, 증서와 서한, 나아가 전문문헌과 같은 실용텍스트를 말한다. 형식이 강조되는 텍스트에는, 시, 희곡, 소설 등의 텍스트가, 호소가 강조되는 텍스트에는 연설과 풍자가 속한다.⁴⁾ 고대 문헌에 관하여 보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서술방식이 구별된다.

1. 통상적 서술방식. 통례적이고 관행적인 것을 유지하고, 명확하면서 장광설 없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서술방식이다.

[366면] 2. 수사적 서술방식. 이른바 문예산문(Kunstprosa)이라는 것으로, 청자나 독자를 설득과 감정의 동원을 통하여 일정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전형적이든 개인적이든 특별한 문체적이고 논증적 수단을 사용하는 서술방식이다.

3. 운문적(poetisch) 서술방식. 운율에 따르고, 단어 선택과 문장구조에 있어 가장 큰 자유를 요구하며, 문학(Dichtung)의 내용, 즉 ‘使信(Botschaft)’이 독창성을 통하여 가급적 순수하고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술방식이다.

이제 곧바로 詩文(Poesie)은 도외시 될 수 있다. 가장 편한 운율인 단장격(短長格. Jambus [역주: ~ -:♪♪])조차도 이를 위하여 확고한 규칙들이 아직 거의 제시될 수 없을 정도로 번역을 어렵게 만드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번역이론이나, 번역실무를 위한 손에 잡히는 지침들을 추구하는 지는, 처음

4) 이에 대하여 Katharina Reiss,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 München 1986³; 나아가 dies., Textbestimmung und Übersetzungsmethode-Entwurf einer Texttypologie, in Wolfram Willss (Hg.), Übersetzungswissenschaft, Darmstadt 1981, 76ff.를 보라.

부터 통상적이거나 수사적인 서술방식에 한정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사학자들도 한편으로는 법률가들의 저술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황제의 칙법들에서 대면하는 영역에 한정하는 것 말이다.

통상적 산문 또는 實事산문(Sachprosa)과 문예산문: 이들 두 텍스트영역은 實寫的으로든 환치적으로든 번역될 수 있다. 또는 달리 이곳에서 부르듯이, 원어 지향적으로 하든 아니면 번역어 지향적으로 하든 무방하다. 첫 번째 언급한 범주는, 번역어가 이것을 허락하는 한, 비록 익숙지 않거나 심지어 조야(粗野)한 어투를 감수하고서라도, 원문의 단어선택, 어순 및 구문론적 구조의 모방을 시도하는 번역방식을 가리킨다. 다른 범주로 의미되는 것은, - 엄격한 정확성의 포기를 감수하고서라도 - 매끄럽고 이해하기 쉬운 독일어를 쓰고자 애쓰는 번역이다.

문예산문에는 사데발트가 문학작품에 요구하였던 것이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오직 원어 지향적인 번역 기술만이 적절하다. 텍스트가 예술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번역은 어투, 어순 및 문장구조에 있어서 더욱더 원문에 포근히 밀착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앞에 놓인 원문의 가능한 한 정확한 모사를 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다.⁵⁾ 반면에 통상적인 텍스트의 경우, 즉 實事산문의 경우에는 번역자에게 두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번역자는 자신의 의도에 따라 더 원어 지향적인 번역기술과 더 번역어 지향적인 번역기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67면] 번역자에게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 그래서 자신의 번역작품이 원문과 마찬가지로 종래 통용되는 것(je Übliche)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면 - 그는 어순이나 구문론의 정확한 재현을 포기할 것이다. 반면에 번역자가 자신의 번역작품이 그저 원문에 대한 안내로서만, 원문의 독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만 고려되기를 원하면, 그는 가능한 한 원어에 밀착해야만 한다. 첫 번째 언급한 방식은 예컨대 법률텍스트(Gesetzestext)의 경우 추천되는데, 이는 어느 한 나라의 언어로 작성되었지만 즉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5) 이것에 대하여는 Verf., Die gute Übersetzung, in: Der altsprachliche Unterricht 1/92, 14ff. 참조.

야만 하는 까닭이다. 물론 스위스 법률이 독일어로는 통상적으로 들리는 반면,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에서는 서투르고 어색하게 들린다면 극히 짜증날 것이다.⁶⁾ 두 번째 방식도 나름 일반적으로는 사료(史料)의 지위를 가지는 법 텍스트(Rechtstext)에서 장점을 가지는데, 특히 그것이 이용자에게 대역본으로 제시되는 경우 그러하다. 원어 지향적 번역은 여기에서 물론 수준 높은 산문작품에서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다. 그것은 예술적 수법의 가능한 한 정확하고 가능한 한 효과적인 재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원문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에만 기여하는 것이다.

Ⅲ. 그렇다면 원문에 가깝고 번역어에서 상대적으로 멀게 하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원문과는 멀고 번역어의 정신으로 하든, 어떻게 적나라한 자의를 범하지 않고, 모든 번역의 기본요청, 즉 대등성(Äquivalenz)의 요청, 더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서 원문에 대한 충실을 위반하지 않고 번역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모든 번역어는 이러한 번역방식상 양자택일의 여지를 가진다는 것이 이제부터 학설회찬 개소의 예시로,⁷⁾ 그러니까 단순한 어투로 수사적 수법의 사용 없이 작성된 하나의 實事的 텍스트(Sachtext)를 가지고 서술될 것이다(원문 전체를 제시한다; 그러나 일련의 가능한 번역들은 제1문에 한한다):

Dig. 45, 1, 102 (*Modestinus libro quinto responsorum*) Venditores emptori caverant pro evictione, quanti eius interesset: sed et specialiter adgnituros, si in lite mota sumptus fecisset, emptori stipulanti promiserant. post mortem emptoris unus ex venditoribus ad iudicium vocavit, pretium sibi deberi dicens, heredes eius: qui sumptus in defensione causae factos, cum probarent pretium solutum fuisse, ex stipulatione petebant. Modestinus respondit, si in eas impensas

6) Els Oksaar, *Fachsprachliche Dimensionen*, Tübingen 1988, 95ff. 참조.

7) 비법학적 텍스트로부터의 예시들은(키케로, 카이사르의 작품에 등장하는 세르비우스 술피키우스 루푸스), *Verf. (주 5)*, 10ff.

venditores promiserunt, quae ob litem de proprietate institutam factae essent, minime ex stipulatu peti posse, quod erogatum est, dum alter ex venditoribus pretium, quod iam fuerat exsolutum, petit.*

[* 역주: 위 개소에 대한 번역문은 원문에서는 이하에서 제1문에 대해서만 4종의 독역본이 제시되고 있는데, 역자는 개소 전체의 번역문을 제시한다.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추탈에 대하여 그[매수인]의 이익상당액을 담보문답계약하였다. 그리고 또한 특약으로, 추탈소송이 제기되어 [매수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문답요약자인 매수인에게 문답낙약하였다. 매수인 사후에 매도인들 중 1인이, 자신에게 매매대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매수인의 상속인들을 제소하였다. 상속인들은 매매대금이 변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소송 방어에 지출한 비용을 문답계약에 기하여 청구하였다. 모데스티누스 해답: 매도인들이 소유권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될 비용에 대하여 문답낙약하였다면 [이 사안에서는] 결코 지출된 것이 문답계약에 기하여 청구될 수 없는데, 매도인들 중 1인이 이미 변제된 매매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그러하다]

[368면] 이 텍스트 중에서 이제부터 제1문을 중세의 每行對應 버전(Interlinearversion)의 문체로* -가령 희랍어 텍스트를 라틴어로 매행대응 번역하는 문체로 - 재현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원어 지향적인 것과 번역어 지향적인 것이 가능한 두 번역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출발점이 첨예한 윤곽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있어서 원어의 단어들은 가급적 의미가 동일한 번역어의 단어들로 그저 대체될 것인데, 그곳에서의 활용형태는 유지하되 번역어의 상이한 문법규칙은 무시하기로 한다:

Verkäufer dem Käufer hatten zugesichert für Entwehrung, wievielen seiner der Unterschied wäre; aber auch besonders anerkennen werdende, wenn er in Streit erhobenem Aufwendungen gemacht hätte, dem Käufer sich ausbedingenden hatten versprochen.

* [역주] 아래와 같은 형태로 원문과 번역문을 배열한 것을 뜻한다.

Venditores	emptori	caverant	pro evictione, ...
Verkäufer	dem Käufer	hatten zugesichert	für Entwehrung, ...

이제 독일어 단어들이 일종의 얇게 회칠된 면처럼 원문의 윤곽들을 아직도 처에서 비쳐보이게 하고 있는 이러한 거의 불가해한 구성물(Gebilde)로부터, 문법에 맞는 독일어 문장을 만들고자 하면, 우선 모든 언어는 두 가지 기본유형의 규범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즉 강행규칙, 곧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명령 또는 금지와, ‘좋은 문체’의 규칙, 곧 거의 항상 또는 대체로 준수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한, 어색하거나 엄청나게 낮은 표현방식을 감수하고서라도 벗어날 수 있는 관행.

많은 언어들 사이에는, 가령 라틴어와 독일어 사이에는 일치하는 규범들과 관행들이 있지만(예컨대, 주어와 술어는 수에서 일치한다는 규범), 이러한 규범들은 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많은 불일치도 있는데, 실로 의무적 규칙에서도 그러하고 임의적 규칙에서도 그러하다. 라틴어에서의 강행적 명령에 독일어에서의 강행적 금지가 대응할 수 있고(예: 화술동사(verba dicendi)에 따른 對格不定法(A.c.I.)과 같은 라틴어에서의 의무적 구성은 독일어에는 낯설다), 라틴어에서 거의 항상 또는 대체로 준수되는 많은 것들이 독일어에서는 그저 허용되기만 하는데, 물론 통용어를 벗어난다(예: 라틴어의 과거완료 또는 미래완료는 독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완료)과거(Imperfekt)나 현재시제에 대응한다). 바로 이러한 불일치들이야말로 이제, 원어 지향적이든 번역어 지향적이든 사람들이 임의의 텍스트를 번역할 수 있는 전제인 것이다. [369면] 원어 지향적 번역은 불가피한 양보들만을 한다. 즉 그것들은 강행규범 영역에서의 불일치만을 고려한다. 번역어 지향적 번역은 더 나아가서 원어와 번역어가 ‘좋은 문체’의 규칙들, 통용어와 일상어의 규칙들을 통해서도 서로 구별된다는 사실도 고려한다.

방금 제시한 매행대응버전은 명백하게 독일어 문법의 상당수 강행규범들을 위반하고 있다. 어순에 있어서 허용되는 한계를 여러 차례 어겼다. 동사에 있어서는 “hatten zugesichert”, “hatten versprochen”, 분사에 있어서는 “erhobenem”, “sich ausbedingenden”. 그밖에도 독일어는 알지 못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구문론적 형태들을 포함하는데, 가치의 속격인 quanti를 “wievielen”으로, 또 목적의 속격 eius를 “seiner”로 옮긴 것, 접속법 “wäre”

(여기에서는 단지 반사실(irrealis) 화법으로만 고려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promiserant에 걸려 있는 축약된 대격 부정법 agnituros (se agnituros esse 대신)를 “anerkennen werdende”로 옮긴 것. 그러므로 모든 이런 위반들은 그저 원어에 가능한 한 가까운 번역본을 만들려는 사람도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 중세에서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외국어 텍스트를 번역어를 매개로 하여 모사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번역어의 강행규칙들이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개념에 따라 충분한, 원어 지향적인 Venditores emptori caverant 이하의 문장의 번역은 가령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

Verkäufer hatten dem Käufer für Entwehrung zugesichert, was für ihn der Unterschied sei; sie würden aber auch besonders anerkennen, wenn er in einem erhobenen Streit Aufwendungen gemacht hätte, hatten sie dem dies sich ausbedingenden Käufer versprochen.

이 번역본은 문법에 맞으며, 원문에의 접근을 쉽게 하는 것에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번역자라면 이것으로써 그것을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우아함이 대체로 권장되어야 하며, 이것은 이제부터 ‘좋은 문체’의 불일치도 고려할 때, 라틴어 구문론과 용어법(Phraseologie)상에서 통용되는 것을 독일어 구문론과 용어법상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대체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먼저 라틴어 과거완료 caverant와 promiserant는 이 경우에 독일어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 문장은 후속한 것보다 이전의 사실을 표현한다. 반면에 fecisset의 선행 시제는 독일어에서는 재현될 필요가 없다. 독일어에서는 (미완료)과거로 충분하다. 또 독일어에서는 [370면] emptori stipulanti promiserant의 등치문을 si 절에 뒤따르게 하는 것은 가능한 하지만 적당치 않다 -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광범위한 치환이 거의 불가피하다. 나아가 번역문이 원문의 품사와 문장의 종류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번역가 작업의 승

인된 원칙에 속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문의 품사나 문장종류를 번역어에서 더 잘 맞는 다른 품사나 문장종류를 통하여 재현해도 된다. 그리하여 예컨대 *maturat proficisci*, “er eilt aufzubrechen”[그는 떠나기를 서두른]을 덜 딱딱한 표현인 “er bricht eilig auf”[그는 서둘러 떠난다]로 변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조건문 대신 관계절을 쓸 수 있다. “wenn er Aufwendungen machte”[그가 비용을 지출했으면] 대신에 “was er an Aufwendungen machte”[그가 비용지출한 것]로 할 수 있다. 상응하는 것이 분사 “sich ausbedingend”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전치사 句文을 통하여 - 가령 “auf sein Verlangen hin” - 대체될 수 있다. 이제 語辭 영역에서 여기저기 수정을 더 가하면 어느 정도 매끄럽고 원어 지향과 번역어 지향 간에 균형을 잡는 번역문이 나온다.

Die Verkäufer hatten dem Käufer für den Fall der Entwehrung den Betrag zugesichert, den das für ihn ausmache; sie würden aber auch besonders anerkennen, hatten sie dem Käufer auf sein Verlangen hin versprochen, was er aufgrund eines etwa stattfindenden Rechtsstreites an Aufwendungen machte.

이 버전은 그렇지만 여전히 원문의 텍스트가 전문표현 즉 로마법의 전문용어들(*termini technici*)로 상당히 채워져 있다는 점을 아주 도외시한 것이다. 실로 “Verkäufer(매도인)”와 “Käufer(매수인)”, “Entwehrung(추탈)”, “Rechtsstreit(소송)”와 “Aufwendungen(비용지출)”의 경우에는 그것이 맞지만, *cavere, quod eius interest* (이익상당액을 담보문답계약하다)와 특히 *stipulari* (문답요약하다)의 경우에는 그것들의 전문용어적 의미에 있어서 아직 완벽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다. *stipulari*와 같은 표현들에서는 번역자는 어찌면 행복하고는 “stipulieren”, “Stipulation”과 같은 미봉책으로써 사전을 참조하도록 지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어쨌든 Otto, Schilling 및 Sintenis에 의하여 편집된 로마법대전 번역본은 이러한 방식을 택하였다.⁸⁾

8) Das Corpus Juris Civilis in's Deutsche übersetzt von einem Vereine Rechtsgelehrter hrsg. von

Verkäufer hatten dem Käufer für die Gewährleistung soviel als dabei als Interesse des Käufers sich ergeben möchte, Sicherheit geleistet, auch noch besonders dem Käufer mittels Stipulation versprochen, daß sie den in dem erhobenen Rechtsstreit etwa gehabt Aufwand anerkennen wollten.

이것은 이제 번역 당시의 문체로 작성된 것이나, 그밖에는 강하게 번역어 지향적인 버전이다. 어투와 구문이 [371면] 라틴어 원문을 모사하지 않고, 이 두 관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즉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독일어의 표현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IV. 전문용어의 번역이라는 곤란한 문제는 여전히 다소간에 상세한 고찰을 요한다. 여기에서 대두될 수 있는 특별한 어려움들은 두 번째 텍스트 예로써 해명할 것이다. 전문어의 어휘들은 부분적으로는 일상어나 모국어 자료로부터, 부분적으로는 외국어 자료로부터 보충된다.⁹⁾ 그것들은 거기에 이미 현존하고 그 특수전문적 의미를 일정한 定義를 통하여 획득하거나(가령 ‘점유’라는 어휘를 일상어에서의 의미와 법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라), 아니면 특별히 전문목적에 위하여 造語된다. 법률용어에 있어서는, 그것이 비근한 이유에서 일반적 이해가능성을 추구해야만 하므로, 모국어로 되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용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이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변동, 곧 일상어와 전문어간의 상호적 주고받음이 일어난다.¹⁰⁾ 번역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모든 전문용어의 경우 어휘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확고한 정의를 가진 용어들이 있고, 이것들에는 그래서 다른 언어들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응어들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으로 정확

Carl Eduard Otto/Bruno Schilling/Carl Friedrich Ferdinand Sintenis, Bd. 4, Leipzig 1832, 638.

9) 이에 관하여는 Wilfried Seibicke, Fachsprache und Gemeinsprache, in: Walther von Hahn (Hg.), Fachsprachen, Darmstadt 1981, 42ff.; Viktor Petioky, Fachsprachen in der Übersetzer- und Dolmetscherausbildung, in: Volker Kapp (Hg.), Übersetzer und Dolmetscher, München 1984², 111ff.를 보라.

10) Oksaar (주 6) 86f.를 보라.

한 상응어가 없는 용어들이 있다. 첫 번째의 경우에 원어의 개념이 정보의 상실없이 번역어의 상응개념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번역자가 대체(용)어(Surrogat)를 찾아야만 한다. 번역자는 번역어의 유사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원어의 전문표현이 가지는 의미내용을 풀어서 의역하거나, 이도 아니면 둘 다 포기하고 그 표현을 그대로 독일어 텍스트에 옮긴다.

용어들의 번역가능성이 상이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言語思考스타일(Sprachdenkstil)과는 무관한 용어와 言語思考스타일과 관련된 용어가 있다.¹¹⁾ 또는 달리 표현하면, 모든 언어공동체의 개념들은 (빌헬름 폰 훔볼트와 슐라이어마허 이래로 [372면] 주지하듯이) 부분적으로는 각 언어공동체의 특수한 체험방식 및 관념방식을 통하여 강하게 형성되었고, 부분적으로는 또한 그러한 주관적 영향들로부터 훨씬 자유롭다. 두 번째로 언급한 범주에는 무엇보다도 자연과학 용어와 技術 용어가 속한다. 첫 번째 언급한 유형의 전문용어는 무엇보다도 정신과학 영역에서 만날 수 있다. 여기에서 그것은 언어공동체의 집단적 성취로서 점진적 발전과정에서 그 특성(Profil)을 얻은 표현의 총체(Inbegriffe)이거나(가령 법의 영역에서가 그러하다), 아니면 개인들에 의하여 고안된 용어일 수 있다 (예컨대 플라톤, 칸트 기타 인들의 철학 언어가 그러하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즉 정신과학 용어의 경우에는 원어를 번역어와 격리시키는 시간적·문화적 간극이 크면 클수록 번역어 내의 사전적 대응어는 더 적게 존재하는 법이다. 번역자가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전술하였다. 다만 전문용어 번역의 경우 한 원칙만큼은 거의 깨지지 않고 적용된다는 점만을 덧붙이고자 한다. 그것은 원어의 동일한 개념은 항상 번역어 내의 동일한 개념에 의하여 재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좋은 문체를 위하여 중요한 용어에 변화주기 준칙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법률용어는 동의어도, 임의로 대체가능할 단어그룹도 알지 못한다.¹²⁾

11) Petioky (주 9) 114f.를 보라.

12) Oksaar (주 6) 99 참조.

이제부터 고찰될 짝막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Dig. 47, 2, 2 - 3 pr. (*Gaius libro tertio decimo ad edictum;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primo ad Sabinum*) Furtorum genera duo sunt, manifestum et nec manifestum. Fur est manifestus, quem Graeci ἐπ' αὐτοφάρω appellat, hoc est eum, qui deprehenditur cum furto.

[역주 2 절도의 종류는 現行盜와 非現行盜 두 가지가 있다. 3. pr. 그리스인들이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부르는 도둑이 現行盜로, 즉 도둑과 함께 붙잡히는 자이다.]

먼저 다시 매행대응버전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번역어의 강행규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축자적으로’ 번역하는 예의 방식이다.

Der Diebstähle zwei Arten sind, der handgreifliche und der nicht handgreifliche. Der Dieb ist handgreiflich, den die Griechen ‚beim Diebstahl selbst‘ nennen, d.h. den, der mit dem Diebstahl ergriffen wird.

보다시피, 라틴어와 독일어의 구문론적 차이가 이 경우에는 거의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는다. 두 언어 모두 여기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규칙을 따르고, 독일어 버전에서의 사소한 차이들은 어디에서도 그 이해가능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373면] 그런 만큼 어휘상의 문제점들이 더욱 거슬리게 눈에 띈다. 복수 “Diebstähle”, 명사구 “handgreiflicher Dieb” 및 마지막 관계문에서의 전치사 “mit”는 다른 해결방안을 요구한다. 실로 방금 거의 깰 수 없다고 언급한 원칙은 지켜졌다. 전문용어 fur/furtum과 manifestus/nec manifestus는 요지부동의 일관성으로써 각각의 동일한 상응어를 갖게 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그러나 만족스러울 수 없는데, 심지어 그것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은 특히 저 원칙의 일관된 취급에 의하여 제약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이전의 번역자들은 어떻게 난관으로부터 빠져나왔을까? “법학자 협회(Vereins Rechtsgelehrter)”의 로마법대전(Corpus Iuris) 번역본의 버전은 다음과 같다.¹³⁾

Es gibt zwei Arten von Diebstahl, offenbaren und heimlichen. Ein offenbarer Dieb is Der, den die Griechen ‚auf der That ertappt‘ nennen, d.h. Derjenige, welcher auf dem Diebstahl selbst ergriffen wird.

아우프바우(Aufbau) 출판사에서 간행된 “로마법”이라는 한 선집(選集)에서는 동일한 구절이 다음과 같이 재현되고 있다.¹⁴⁾

Es gibt zwei Arten von Diebstahl: den, wo der Dieb auf frischer Tat ertappt wurde, und den, wo er nicht auf frischer Tat ertappt wurde. Ein offenkundiger Dieb ist der, den die Griechen ‚auf frischer Tat ertappt‘ nennen, d.h. derjenige, der bei dem Diebstahl selbst ergriffen wird.

두 번역에서 *manifestus/nec manifestus* 어휘는 만족스럽게 재현되지 않았고, 양자는 그것을 - 아마도 *furtum* = Diebstahl이라는 통일적인 동치(Gleichung)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 전치사 *cum*을 규칙에 어긋나게 “auf” 또는 “bei”를 써서 독일어로 옮겼다.

manifestus/nec manifestus 어휘는 이미 12표법에서 나온다. 이것들은 로마법의 가장 오래된 성층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들의 古拙期的 기원은 짧은 단어 *nec*으로부터도 드러나는데, 이 단어는 나중에도 항상 “~도 아니”를 의미했고, *negotium* [무휴, 일], *necopinans* [생각지 못한]의 경우처럼 古라틴어로부터의 몇몇 잔존어에서만 (連詞기능이 없는) “아니”의 의미로 보존되었다. 이러한 성층에 속하는 용어들은 번역자에게 드물지 않게 특히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 그것들은, 어쨌든 그것들의 법률적 의미로는, 흔히 일상라틴어와는 전혀 또는 단지 매우 근소한 관련만을 가졌고(가령 *capitis deminutio*[頭格減等], *cretio*[要式 상속승인], *mancipatio*[握取行爲], *pauperies*[四足動物加害], *stipulatio*[문답계약], *vindiciae*[잠정적 자유부여, 잠정점유] 등 다수), 무엇보다 그것들은 유스티니아누스 이후 시대에서는 거의 자취가 없었으니,

13) Das Corpus Iuris Civilis (주 8), 815f.

14) Hrsg. von Liselot Huchthausen/Gottfried Härtel, Berlin - Weimar 1989³, 241f.

곧 [374면] 근대 유럽의 법질서들은 법제도들과 용어상 어느 정도 유사한 대응어를 갖고 있지 않다. 번역자는 그것들을 돌려 표현하거나 독일어로의 번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예컨대 유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의 새로운 번역본은 *capitis deminutio*를 “신분변동(*Statusänderung*)”으로 재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arrogatio*[自權者입양]를 “*Arrogation*”으로 그대로 두었다.¹⁵⁾ *manifestus/nec manifestus*의 경우 “auf frischer Tat (nicht) ertappt”와 같은 번거로운 우회표현은 불필요하다. *manifestus/nec manifestus*의 단어 동치는 독일어에서도 유지될 수 있으므로 “*offenbar/heimlich*”와 같은 재현을 통하여 제거되지 말아야만 하고, *fur*, “*Dieb*”의 경우에도 동일한 단어를 *manifestus*에 대해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 “*handgreiflich*”는 피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단어쌍 “*offenkundig*”(또는 “*offenbar*”)/“*nicht offenkundig*”가 남는다.

다시 *furtum*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일단 “*Diebstahl*”이 심히 부정확한 대응어라는 사정이 있다. 이 표현은, 주지하듯이, 횡령과 권한없는 사용 및 심지어 일정한 詐欺의 경우를 포괄한다. 많은 번역자들은 이 단어를 “*Entwendung*”으로 재현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자 모색한다 - 이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는지는 미정으로 남겨둔다. 번역자에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은, *furtum*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추상명사이자 구상명사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절도”도 의미하고, “훔친 물건”, “도품”도 의미한다. 사전들은 두 번째 의미를 ‘환유’로 분류한다.¹⁶⁾ 즉 하나의 수사적 轉意(*Tropus*), 비유적 용법으로 본다(*Ceres*가 “빵”을, *Bacchus*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과 유사하게). 실상은 아마도 “도품”으로서의 *furtum*이 원래의 고유한 의미였을 것인데, 비록 이 단어가 그러한 사이에 하나의 불법행위 구성요건에 대한 추상명사로도 사용되었지라도 이 의미는 특정한 맥락에서는 유

15) *Corpus Iuris Civilis, Text und Übersetzung I: Institutionen*, übersetzt von Okko Behrends/Rolf Knütel/Berthold Kupisch/Hans Hermann Seiler, Heidelberg 1990, 가령 18, 28.

16) *Thesaurus Linguae Latinae*, Bd. 6, 1, Leipzig 1912-26, s.v. (Sp. 1648)이 그러하다; 나아가 Karl Ernst Georges, *Ausführliches lateinisch-deutsches Handwörterbuch*, Hannover - Leipzig 1913⁸, s.v.도 보라.

지되었다. 예컨대 가이우스 법학원론에서의 *furtum conceptum*과 *furtum oblatum*(“藏匿된 도둑”과 “轉置된 도둑”)의 定義를 떠올려보라:¹⁷⁾ *oblatum furtum dicitur, cum res furtiva tibi ab aliquo oblata sit etc.* - “轉置된 도둑이란, 도둑이 너에게 어떤 자에 의하여 轉置된 경우를 말한다” 등등. [375면] 명백히 이제 *furtum*은 예시 텍스트의 *cum furto* 표현에서도 구상적인 의미를 가진다. *cum*은 여기에서 동반의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고(*cum toga venire* [토가를 입고 가다] 표현에서와 같이), “auf”나 “bei”로 해석될 수 없다. 인용된 두 번역의 산출자들에게 이 점이 숨겨진 채로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furtum* = *Diebstahl* 이라는 통일적 동치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cum*의 진정한 의미를 희생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그들은 라틴어 원문의 의미를 변경시켰다. 왜냐하면 율피아누스는 인용된 부분에 이어서,¹⁸⁾ 어떤 자가 절도의 실행 중에 붙잡히는 경우에만 현행절도범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붙잡힌 경우에도 현행절도범인지를 묻고, *si cum re furtiva fuerit adprehensus, priusquam eo loci rem pertulerit, quo destinaverat* - “그가 도둑을 가져다 놓기로 작정한 장소에 도둑을 가져다놓기 전에 도둑을 소지한 채로 붙잡히는 경우”에 현행절도범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deprehenditur cum furto*, “그가 도둑을 소지한 채 붙잡힌다”라는 어구를 통하여 간결하고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 “er wird auf/bei dem Diebstahl selbst ergriffen”[그가 절도 행위 시에 붙잡힌다]이라는 재현은 훨씬 좁은 ‘현행성/현장성’(Offenkundigkeit)

17) 3, 186f.

18) D.47,2,3, 2.

[역주로 개소의 원문과 번역문을 제시한다.

D.47.2.3.2 Ulp. 41 ad Sab.

Sed utrum ita demum fur sit manifestus, si in faciendo furto deprehendatur, an vero et si alicubi fuerit deprehensus? et magis est, ut et Iulianus scripsit, etsi non ibi deprehendatur, ubi furtum fecit, adtamen esse furem manifestum, si cum re furtiva fuerit adprehensus, priusquam eo loci rem pertulerit, quo destinaverat.

(그런데 절도 실행 중 붙잡히는 경우에만 현행절도범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붙잡힌 경우에도 현행절도범인가? 더 나은 견해는, 율리아누스도 기술하였듯이, 절도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작정한 장소에 도둑을 가져다놓기 전에 도둑을 소지한 채로 붙잡히는 경우에는 현행절도라는 것이다.)

의 정의, 율피아누스에 의하여 거부된 의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경우에는 용어의 통일적 재현원칙을 무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긍할 수 있는 이 구절의 독역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Es gibt zwei Arten von Diebstahl, den offenbaren und den nicht offenbaren. Ein offenbarer Dieb ist der, den die Griechen ‚auf frischer Tat ertappt‘ nennen, d.h. der, der mit dem Diebesgut ergriffen wird.